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 탐색*

김희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에 나타나는 아동권리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를 위해 한국의 2019 개정 누리과정,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 핀란드의 NCCECEC(2022), NCCPE(2014)를 중심으로 문헌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 분석은 국가 간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을 비교한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한국과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육권, 다양성 존중 등의 권리가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 운영 지침에서는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 영유아의 놀 권리 보장과 배움을 지원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 탐색을 통해 우리나라 ECEC 교육과정에 권리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영유아 권리 존중의 장으로서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한국, 핀란드, 교육과정, ECEC, 아동권리

* 본 연구는 2022년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신진연구자 지원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 호서대학교 학습역량지원센터

1. 서론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은 아동의 보호와 아동 고유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들을 규정하고 있다(김인숙, 1996).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유아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인간답게 살도록 삶의 영역을 확보해 주겠다는 세계의 모든 아동을 향한 어른들의 약속으로(문선화, 류기형, 김경호, 이경남, 홍봉선, 2000), UN CRC 비준국들은 아동 관련 입법, 행정, 사법 조치 및 제도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의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구체화 시키고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강현구, 2014).

북유럽에서는 ‘유아교육은 아동의 권리’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유아 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06). 북유럽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ECEC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강제성을 도입하는 대의명분이 되어 ECEC에 대한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가 ECEC 목표를 수립하고 지침과 재정 원칙을 설정하며, 지자체는 부모가 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한유미, 2013). 특히, 핀란드는 ECEC 기관의 입학 보장과 관련된 주관적 권리(subjective right)를 세계 최초로 법제화한 국가(Hiilamo, 2002; OECD, 2012/2013)이며, 현재 ECEC 선진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UN CRC를 비준하고 여러 제도와 정책에서 아동 권리를 보장·실천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 ECEC의 근간이 되는 유아교육법 및 기본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로 제 3조 보육이념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신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UN CRC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기본교육법 제 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국가법령정보센터, 2024b)으로, 기본교육법 제 3조 학습권, 제 4조 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 6조 교육의 중립성, 제 8조 의무교육 등과 같은 조항은 UN CRC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정기보고서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포함한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강현구, 2014)을 제시하였다.

유니세프 인노센티 연구소(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는 2008년 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10개의 지표를 발표하고 해당 지표를 준거로 OECD 25개 국가들의 ECEC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개 지표 중 4개를 충족하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8개의 지표를 충족하고 있다(UNICEF, 2008). 우리나라는 「유아교육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등을 토대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ECE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UNICEF 10개 지표 중 ‘불리한 아동의 우선권을 위한 국가 계획, 교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 수준, 더 높은 교육과 훈련을 받은 교직원의 최소 비율, 보편적인 건강지원 3개 중 2개 이상 충족’에 대해서만 충족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UN CRC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학 전 영유아에 대한 권리 존중보다는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과 중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권리 존중 및 증진에 대한 대책 추진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대한 UN 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 정부 국가보고서 검토 및 권고에는 ECEC 관련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강현구, 2014).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가 ECEC 서비스에서 아동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존중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한편, OECD(2006)는 ECEC와 관련하여 모든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정책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이는 ECEC와 관련하여 어느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정책 내용 중에는 ‘관계자들과 함께 ECEC 서비스를 위한 지침과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 ‘아동의 관점과 자연스러운 학습전략 존중, 아동의 복

지, 생애초기의 발달과 학습을 교육·보육의 중심에 둘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ECEC 교육과정 측면에서의 아동권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을 예측한다. 우리나라와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은 관련 소관 부처, 대상 연령, 교육과정 문서 체계 및 편성·운영 등이 상이하나 아동권리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에서 유아 중심, 놀이와 배움의 강조를 통해 아동권리를 보장 및 실현하고자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개정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을 통해 아동의 권리 보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아 교육과 보육을 위한 부처 통합과 아동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핀란드(유은영, 2021)의 ECEC 교육과정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는 향후 영유아를 위한 교육의 가치를 확립하고 실현하는데 기초가 되는 ECEC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ECEC 분야의 아동권리 관련 선행연구는 유아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교육 및 보육제도 고찰 연구(나정, 2010; 정선아, 2007), 유아권리 및 권리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나은숙, 양지애, 2011; 서보순, 2016; 서영숙, 서혜경, 김진숙, 2009), 유아권리준중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교사 요인 분석 연구(고영자, 2018; 김영아, 2013; 김태윤, 김미숙, 2018; 이용주, 김정희, 2018) 등으로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국가 수준의 ECEC 교육과정을 탐색한 연구는 미비하다.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문서화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NCCECEC, 2018)와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NCCPE, 2014)의 교육과정 특징과 현장에서의 실행 양상을 탐색한 유은영(2021)의 연구,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 제도를 유아교육 운용체계, 유아교사 양성체계, 유아교육과정 체제로 나누어 비교한 윤아영(2018)의 연구가 있다. 윤아영(2018)의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과정 체제를 유아교육목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유아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는데, 연구 대상인 교육과정은 한국의 3-5세 연령별 누리과정(2013)과 제 3차 표준보육과정(2013),

핀란드의 NCCECEC(2003)와 NCCPE(2000)으로 현재 적용되는 교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국가 수준의 유아 교육 및 보육 과정을 아동권리 측면에서 탐색하는 것은 아동권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게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 상황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구성 방향에 나타난 아동권리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침에 나타난 아동권리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 제도

한국의 교육제도는 일반적으로 3~5세까지의 유아교육(유치원), 6~11세까지의 초등교육(초등학교), 12~17세까지의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 18세 이상의 고등교육(전문대학, 대학교)으로 구분된다(교육학용어사전, 2024). 더불어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인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4a). 정리하면, 한국의 유아교육·보육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 0~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보육으로 구분된다. 현재 소관 부처는 유치원이 교육부, 어린이집이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보다 질 높은 교육·보육을 위해 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8일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주관 부처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유보통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은 3~5세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 0~2세 영아를 위한 표준보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 누리과정은 생애 초기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고, 3~5세 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켰으며,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밖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용률이 증가되었으며, 누리과정 운영자와 이용 부모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누리과정 담당 교사의 자격이 증진 및 처우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들이 있다(김은영 외, 2018; 이윤진, 김지현, 이민경, 2016;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 2015; 조부경, 김정은, 2017).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의 권리 증진과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누리과정은 2019년, 표준보육과정은 2020년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교육과정 개편의 주요 방향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재정립이다.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과 제 4차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2020)에는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하며 배우는 교육과정으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유아의 주도적 놀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동의 권리 중 참여권에 대한 인식 전환과 유아의 참여권 강화를 추구하는 것이라 하겠다.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Hakari, 2020). 먼저, 0~6세까지 모든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이 있다. 이 중 1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초등교육 준비를 위한 의무연한인 취학 전 예비초등교육(Pre-primary education)이다. 이후, 9년의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이 있으며, 일반적인 중등교육(General upper secondary education)과 직업교육훈련(Vocational upper secondary education and training), 대학(Universities)와 응용과학대학(Universities of applied sciences) 교육이 있다. 정리하면,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은 0~5세 영유아 대상의 ECEC 서비스와 6세 유아 대상의 학령전 교육(pre-school education)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0~5세까지의 ECEC 서비스를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6세 유아학교는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에서 이원화된 체제로 관리하였으나, 2013년 ECEC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가 교육문화부로 이관되어 0~6세 영유아에 해당 ECEC

서비스 모두를 교육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부처 통합 이후 제시된 최초의 교육과정은 0~5세를 위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8)와 6세를 위한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4)이다(유은영, 2021). 2021년 8월부터는 5, 6세 혼합연령 집단으로 운영하는 2년제 유아학급 실험(An experiment in two-year pre-school education 2021)을 실시하였는데 교육과정은 NCCPE(2014)에 기술된 유아교육의 사명과 일반 목표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1). 2022년에는 ECEC법 개정에 따라 NCCECEC(2018)가 일부 수정되었는데,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큰 변화가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ECEC에서 지원 받을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NCCECEC(2022)와 NCCPE(2014)에는 놀이와 배움에서 아동의 주도성과 행동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아동중심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연약하고 의존적인 아동(vulnerable and dependent child)에 대한 개념이 UN CRC를 근거로 유능한 아동(competent child)의 개념으로 변화된 것이자 사회적 교수 접근 교육과정의 특징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하겠다(Kjorholt, 2002).

2.2 ECEC와 아동권리

UN CRC는 범세계적인 국제인권조약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의 아동권리를 총망라한 권리 실현의 지표이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UN CRC는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을 권리의 주체임을 명시하고 아동권리 실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이은주 외, 2018), 한국은 UN CRC 비준국으로 협약의 각 조항을 충실히 이행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한국은 과거에 비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 존중 및 보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21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 건수는 37,605건으로 이중 유치원 및 보육 교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는 1,361건이었

다. 이에 비해 2022년에는 전체 아동학대 건수 27,971건, 이중 유치원 및 보육 교직원에 의한 학대 건수는 700건으로(KOSIS, 2024), 유아교육기관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과 보육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를 분석한 유정인(2023)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존중 중요도 전체 평균은 실행도 전체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 유아교사가 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실천하는 것 사이에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영유아 권리존중 교육 및 보육 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2018, 2019)에서는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인권 보장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의 정책적 시도를 하였다(정동재, 김진옥, 2021). 또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5)에서는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현장의 교사들이 영유아 권리 존중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도모하고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 전반에서 영유아 권리 존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에 과거에 비해 많은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바람직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종종 영유아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서혜정, 고지민, 2014; 유수복, 2019; 이선미, 2012; 김혜진, 2020 재인용). 이는 자유놀이 시간, 대·소집단 활동 시간, 점심 및 낮잠 시간과 같은 일상생활활동 시간 등 교육 및 보육과정 운영 시간 전반에 걸쳐(유수복, 2019), 영유아의 생리적 욕구의 타율적 조절, 규제와 통제, 돌봄의 일시적 부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서혜정, 고지민, 2014). 현재 시행 중인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과 제 4차 표준보육과정(보건복지부, 2020)의 개정 취지에서도 여전히 영유아 권리 존중이 강조될 만큼 교육 및 보육과정의 실천적 측면에서 보다 나아가 할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 및 보육과정은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에 기반하여 계획·운영되는 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교육과 보육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문서에 제시된 아동권리 요소를 탐색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하겠다.

핀란드는 다른 북유럽 국가와 비교해서 ECEC에 아동권리를 통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늦었다(Mansikka & Lundkvist, 2019). 이는 핀란드가 아동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에 국가 아동 옴부즈맨을 설립했다는 사실로 표현된다(Mansikka & Lundkvist, 2022). 옴부즈맨은 공권에 대해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고 관련 처리과정이 법적으로 정당하고 공정하였는지를 다루는 역할을 한다(권정윤, 한유미, 김희영, 2022). 아동은 옴부즈맨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옴부즈맨 역시 아동이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옴부즈맨이 필요한데(이재연, 2006), 노르웨이는 1981년, 스웨덴은 1993년에 아동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고 핀란드는 북유럽에서 가장 늦게 아동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핀란드는 최근 국회 옴부즈맨실 내에 존재하던 아동복지 전문 옴부즈맨을 대신하여 아동 옴부즈맨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아동권리 실천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권정윤 외, 2022).

한편, 핀란드는 ECEC 서비스에 대한 영유아의 출석률도 다른 북유럽 국가에 비해 낮으며, EU 및 OECD 국가의 평균보다도 낮는데 이는 핀란드의 ECEC 특징이 교육보다는 사회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강조했기 때문이다(Onnismaa & Kalliala, 2010). 핀란드의 ECEC 기본 가치는 평등과 정의의 실현이다. 핀란드 ECEC 정책의 전환점이 된 계기는 1973년 ‘아동보육법(Day Care Act)’ 제정으로 중산층 자녀들이 주로 다녔던 ‘유치원’과 저소득층의 기혼모 자녀들이 주로 다녔던 ‘탁아소’가 빠이바꼬띠(päiväkoti, day care center)라는 하나의 시설로 개편되면서부터이다(Onnismaa & Kalliala, 2010, 육아정책연구소, 2015). 빠이바꼬띠(päiväkoti)는 사회적 서비스와 교육적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이라는 뜻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복합된 의미를 가지며(Utunen, 2005), 이는 아동보육법의 제정 배경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아동보육법이 제정된 배경은 첫째, 사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다른 제도와 함께 영유아가 있는 가족을 지원 둘째,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직업에 종사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셋째, 아동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발달이나 사회적 배경에서 발생하는 격차 해소 넷째, 모든 아동에게 연령과 발달 차이에 따른 개별 활동, 학습, 휴식의 지원

등이다(Opetus-ja kulttuuriministeriö, 2014; 육아정책연구소, 2015 재인용). 이처럼 핀란드의 초기 ECEC는 부모의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과 같이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을 두었으나 21세기에 들어서는 교육에 보다 초점을 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2). 즉, ECEC의 거버넌스가 사회 부문에서 교육 부문으로 옮겨가, 아동 권리를 포함한, 그리고 영유아가 아동 권리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기 능할 수 있는 ECEC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Mansikka & Lundkvist, 2022). 이에 핀란드 ECEC 운영에 기초가 되는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 문서 속에서 아동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고 존중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교육은 아동 권리를 중재하고 실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UNICEF, 2007). 교육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권(CRC 제 28조)이지만, 교육은 다른 권리를 증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권리 영역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Quennerstedt, 2015). 교육과 아동 권리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에 대한 접근과 운영 등을 아동 권리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아교육 및 보육의 실행에 기초가 되는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 권리를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과 핀란드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에 대한 문헌 자료이다. 한국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 문헌자료는 3~5세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 0~2세 보육과정인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보건복지부, 2020)이다. 핀란드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 문헌자료는 0~5세 교육과정인 NCCECE(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6세 교육과정인 NCCPE(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4)이다. 그 밖에 한국 및 핀란드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지원 자료, ECEC 아동권리 관련 법령, 선행연구, 신문기사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3.2 자료수집

문헌 자료의 수집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첫째, 한국의 국가 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 교사 지원 자료는 i-누리 포털 사이트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과정 웹사이트에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였다. 핀란드의 국가 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 교사 지원 자료는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홈페이지에 제시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밖에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National Curriculum Information Center),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둘째, ECEC 아동권리 관련 법령은 한국의 경우 법제처 사이트에서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검색하였다. 핀란드의 경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이트 내 핀란드 유아 교육 및 보육의 ‘교육지침(Educational guidelines)’에 연동되어 제시된 ECEC 개정 법안, 기초교육법을 살펴보았다.

셋째, 학술지 논문, 석·박사 논문, 연구보고서 등의 선행연구와 신문 기사 등은 학술지 검색 사이트인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Google 학술 검색 사이트를 기초로 기타 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검색 시 ‘누리과정’, ‘표준보육과정’, ‘교육과정’, ‘보육과정’, ‘한국’, ‘핀란드’, ‘유치원’, ‘유아학교’, ‘어린이집’, ‘아동권리’, ‘영유아 권리’ 등의 키워드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검색하였다.

3.3 자료분석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ECEC 교육과정 개발 의도를 비롯한 맥락에 대

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나라의 ECEC 정책 및 교육과정에 배경이 되는 아동권리를 먼저 탐색하였다. 이후 한국과 핀란드의 국가 수준 ECEC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아동권리 요소를 고찰하였다. 교육과정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에 대한 분석은 나라별 유아교육제도를 비교한 선행연구(이건희, 김정숙, 2013; 윤아영, 2018)에서 사용한 분석 틀을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분석틀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에 나타난 아동권리 탐색을 위한 분석틀

비교 분야	비교 요소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구성 방향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문서 구성 체계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성격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교육 목적 및 목표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운영 지침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편성·운영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의 교수·학습 방법

4.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

4.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구성 방향에 나타난 아동권리

4.1.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문서 구성 체계

한국의 ECEC 교육과정 중 3~5세 유아를 위한 2019 개정 누리과정(교육부, 보건복지부, 2019)은 누리과정의 성격, 총론,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누리과정의 성격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 공통 교

육과정임이 명시되어 있다. 총론에는 누리과정의 구성방향(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과 누리과정의 운영(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이 제시되어 있다.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의 목표와 59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0~2세를 위한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은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총론 해설, 0~1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 해설, 2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 해설의 4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표준보육과정의 이해에는 고시 배경과 특성, 총론 해설에는 표준보육과정의 성격과 구성 방향, 운영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어 있으며 0~1세, 2세 영역별 목표와 내용 해설에는 해당 연령에 대한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6개 영역별 목표와 0~1세는 40개, 2세는 43개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 중 0~5세를 위한 NCCECEC(2022)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ECEC, ECEC의 사명과 일반 목표, ECEC 운영 문화, ECEC 교육활동 계획과 실행, 영유아에 대한 지원, 대안적 교수 또는 특정 세계관에 기초한 ECEC, ECEC 운영 평가 및 개발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6세를 위한 NCCPE(2014)는 국가 핵심 교육과정과 지역 교육과정, 취학 전 교육 사명과 일반적인 목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운영 문화, 초등 전 교육 실행의 원칙, 유아의 성장과 배움에 대한 지원, 학습자의 복지, 특정 세계관 또는 교육 시스템에 기반한 초등 전 교육의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유은영, 2021).

살펴본 바와 같이, 두 나라의 교육과정 문서의 구성 체계는 상이하다. 그러나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는 교육 목표와 내용이 높이를 통해 배우며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상 혹은 ECEC 사명(mission)을 향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항을 중심으로 문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1.2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성격

한국의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누리과정의 성격을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공통’이란 유치원과 어린이집

을 모두 지칭하며, 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은 국가가 고시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인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어느 기관에 다니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별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함을 나타낸다. 0~2세를 대상으로 하는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에서도 보육과정의 성격을 0~2세 영아가 지역이나 기관에 관계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누리과정 및 표준보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를 제시하며 지역, 유아교육기관, 유아 개인 수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유아가 다양한 배경과 환경적 맥락 등이 고려된 상황에서 고유한 존재로 인정받으며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핀란드의 0~5세를 위한 NCCECEC(2022)에서는 ‘국가 차원과 지역 차원의 ECEC’ 부분에서 NCCECEC(2022)가 국가 수준의 ECEC 교육과정임을 명시하며 모든 유형의 ECEC 서비스 제공자는 NCCECEC(2022)를 기반으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 NCCECEC(2022)은 ECEC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으로 지역 차원의 교육과정은 지역의 특수성, 영유아의 요구, 교수방법, 교육 계획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NCCECEC(2022)에 세부사항을 추가할 수 있지만, NCCECEC(2022)에 규정된 목표나 내용을 배제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정 수준에 따라 모든 유아가 양질의 ECEC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영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과 맥락이 고려된 ECEC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나타낸다. 6세를 위한 NCCPE(2014)도 NCCECEC(2022)와 유사하고 일관된 기초를 띄며 취학전 의무교육이라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는 국가 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이다.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은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한국과 핀란드는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을 제시함으로써 모든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과 핀란드의 국가수준 유아교육·보육과정에서는 ECEC 교육과정 계획·운영 시 영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요구, 가정 및 지역 사회의 다양성 등을 반영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수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영유아 개인의 고유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모든 영유아는 타고난 기질이나 유전적 특성, 발달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개인차를 지니고 있으며 영유아는 개인차에 의한 편견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체의 존재로 존중받아야 함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4.1.3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교육 목적 및 목표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에서는 교육의 비전(vision)인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유아의 전인발달을 추구함을 의미한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영유아가 일상에서 놀이 하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영유아가 앞으로 배우며 성장해 가야할 모습이기도 하다. 전인발달을 위해서는 유아가 즐겁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고 이는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유아의 전인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에서는 유아기, 영아기의 특성을 반영하여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지향하는 바를 교육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이다.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누리과정(2019)의 구체적인 목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이다. 표준보육

과정(2020)의 목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즐겁게 생활한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자 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탐색하며 상상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가지고 감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로 누리과정(2019)의 목표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핀란드의 NCCECEC(2022)에는 ECEC의 사명(mission)과 일반 목표 10가지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ECEC의 사명(mission)과 일반 목표는 아동 권리가 반영된 ECEC법(56)에 따른 것으로 ECEC 교육과정의 기본 가치는 어린 시절의 본질적인 가치, 인간으로서의 성장, 아동의 권리, 형평성·평등·다양성, 가족의 다양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나타낸다.

< ECEC의 사명(mission)과 일반 목표 >

- ECEC의 사명(mission)
 - 보호자와 협력하여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 학습을 증진한다.
- ECEC의 일반 목표
 - 아동의 연령과 발달에 따라 모든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 발달, 건강, 복지를 도모한다.
 - 포용의 원칙에 따라 아동의 다양한 학습 배경을 지원하고 평생 학습과 교육 평등 구현을 도모한다.
 - 아동의 놀이, 신체활동, 예술 및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긍정적인 학습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 아동의 유아교육 및 보육 환경이 발달과 학습을 촉진하고 건강하고 안전한지 확인한다.
 - 아동을 존중하는 접근 방식을 존중하고 아동과 ECEC 교직원 간의 대인관계가 가능한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등과 양성평등을 도모하며, 어린이들이 일반적인 문화유산과 서로의 언어, 문화, 종교, 이념적 배경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돕는다.

- 개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 전문가의 협력이 포함된 적절한 지원을 아동에게 제공한다.
- 아동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기술을 함양하고, 또래집단에서 행동할 수 있는 아동의 능력을 증진시키며, 아동이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행동을 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한다.
- 아동이 그들에 관한 문제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
- 아동의 균형적인 발달과 복지를 위하여 아동과 아동의 부모 또는 양육권을 가진 자와 함께 행동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6세를 위한 NCCPE(2014)에도 교육기본법(628/1998)에 따르는 취학 전 교육의 사명이 제시되어 있다. 사명은 어린이가 인간다움과 윤리적 책임을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삶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으로 어린이의 학습 능력의 향상을 돕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NCCPE(2014)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수준 높은 취학 전 교육의 평등 보장을 이루기 위함도 명시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4).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의 목적은 영유아가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의 사명(mission)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 목표는 다양한 활동 및 관계형성 지원, 유아 개인의 다양성 존중 및 풍부한 환경 제공 등이다(윤아영, 2018). 살펴보면, 한국과 핀란드의 ECEC 목적에는 공통적으로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의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목적에는 ‘놀이를 통해’라는 표현이 제시되었는데 교육목적은 이루는 데에 영유아기의 고유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운영 지침에 나타난 아동권리

4.2.1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편성·운영

한국의 누리과정(2019)에서는 교육과정을 1일 4~5시간 편성하며, 놀이 시간은 일일 2시간 이상으로 하여 충분한 놀이 시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누리과정 운영 시간은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각 기관의 실정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놀이 시간은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 놀이의 흐름이 끊기지 않고 충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일일 2시간 이상의 놀이 시간 편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지원하기 위해 놀이의 흐름에 따라 계획된 일과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유아가 실제 놀이한 내용, 놀이를 지원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 및 유아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계획안에 기술하는 등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유아를 둘러싼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함께 유아의 자율성과 주도성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아에 대한 비차별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ECEC 운영 문화이다. ECEC 운영 문화에서는 놀이와 상호작용을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는 운영 문화는 영유아가 행복감과 배움에 있어 놀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ECEC 교직원들은 영유아의 놀이를 돕기 위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고 학습 환경을 개선해 나가며, 영유아가 교직원들과 함께 놀이하고 학습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며,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 표현 및 상상력, 창의력 등을 발휘하도록 장려된다(NCCECEC, 2022). 영유아는 공동체에 속하여 활동에 참여하고 또래와 함께 자신의 장점과 긍정적인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성장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ECEC 운영 문화는 영유아의 발달권

증진에 기여한다고 하겠다. 또한 ECEC 운영 문화에는 교직원, 가정, 지역사회 간의 존중과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교직원은 유아의 또래 관계형성을 지원하고 우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사회 역시 유아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집단의 구성원으로 기대되는 행동을 하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래 집단과 그 속에서의 경험은 영유아의 배움과 참여의 중요한 요소로 운영문화 안에서의 상호작용적인 관계와 긍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영유아의 전인발달과 권리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에서는 공통적으로 교육 및 보육과정에 놀이를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보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사는 모든 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와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아에 대한 이해와 흥미에 기초하여 교육 및 보육과정을 계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영유아의 발달권 존중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핀란드에서 놀이 안에서의 상호작용과 긍정적 정서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각 나라가 발달권 증진의 요소로 강조하는 부분이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4.2.2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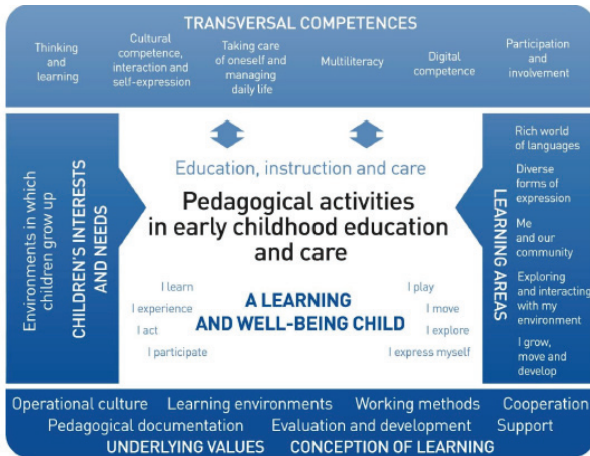
한국의 누리과정(2019)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놀이를 통한 배움이다. 놀이를 통한 배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교사는 유아를 존중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김은영, 2019).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은 유아의 권리 중 참여권에 대한 존중이 강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에서도 누리과정(2019)에서와 같이 영

유아의 놀권리를 강조하며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안내하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영아의 경험 이해와 함께 공간 구성, 자료 제공, 일과 운영, 상호 작용, 안전 차원에서의 놀이 지원을 누리과정보다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보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의 풍부한 자원과 지역 인사를 활용하고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하는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하는 등 영유아를 직접 가르치는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등도 모두 ECEC의 주체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할 것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영유아의 권리 보장이 사회구성원 모두의 역할로 포괄적 접근과 실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핀란드의 NCCECEC(2022)에 제시된 ‘ECEC 교수 활동을 위한 틀’은 영유아를 위한 개별 교육 및 집단 활동 계획의 기초로 활용된다. <그림 1>와 같이 ECEC 교수 활동을 위한 틀은 교육활동 계획과 실행으로서 총체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보여준다.

<그림 1> ECEC 교수 활동을 위한 틀



출처: The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 35.

ECEC 교수 활동을 위한 틀은 영유아의 학습과 안녕(well-being)뿐만 아니라 횡단적 역량(transversal competence)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특징적으로는 개별 교육 및 보육 계획(individual ECEC plan)을 작성 할 때, 영유아의 목소리와 부모 상담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유은영, 2021). 이때 영유아의 개별 계획은 그룹을 위한 활동 계획의 기초로 사용되어야 하며 활동은 각 영유아의 학습을 증진하고, 나아가 ECEC와 취학 전 교육이 학습의 연속선 상에서 영유아에게 의미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학습을 통해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핀란드의 NCCECEC(2022), NCCPE(2014)에서도 영유아에 대한 지원, 유아의 성장과 배움에 대한 지원이 기술되어 있다. 이는 영유아를 격려하고 성공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모든 영유아(수준이 높은 유아, 수준이 낮은 유아, 장애아,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유아 등)의 강점과 필요를 기반으로 일반지원, 강화지원, 특별지원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 및 가정과의 협력, 지역 서비스와 협력하며 지원에 대한 계획과 평가를 실시한다(NCCECEC, 2022). 모든 영유아는 개인적·환경적 특성에 관계없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이를 실제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영유아가 자신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학습 방법은 놀이이다. 한국에서는 영유아의 참여권 증진을 통한 주도적 놀이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핀란드에서는 영유아와 놀이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두며, 자유로운 놀이를 하는 영유아의 고유한 특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영유아의 놀이권과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을 분석틀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에서 문서의 구성 체계, 성격,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운영 지침에서는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비교요소로 하여 살펴보았다. 비교요소별 분류를 통해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 문서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에서는 영유아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 영유아의 고유성 및 개인차 등이 존중되고 보장받도록 기술되었다. 먼저,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성격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ECEC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에서는 공통적으로 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동시에 추구할 것을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인 NCCECEC(2022), NCCPE(2014)도 NCCECEC(2022)와 NCCPE(2014)가 국가 수준의 ECEC 교육과정임을 명시하며 모든 유형의 ECEC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수준의 ECEC를 기반으로 영유아를 위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기준은 ECEC 서비스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영유아들이 차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함께 다양성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이라 하겠다.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교육 목적 및 목표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의 목적은 영유아가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며, 핀란드의 NCCECEC(2022)와 NCCPE(2014)의 사명(mission)은 영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균형적 발달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국과 핀란드의 ECEC 목적에는 공통적으로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인 NCCECEC(2022)는 ECEC법(Act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540/2018), NCCPE(2014)는 기본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에 근거한다. ECEC법과 기본교육법은 UN CRC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핀란드의 ECEC는 ‘아동 최선의 이익’이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일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4, 2022).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기관, 가정 보육, ECEC 교직원 등은 ECEC법과 ECEC에 관한 기본 가치, 목표 및 내용을 따르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CCECEC(2022)와 NCCPE(2014)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으로의 성격을 띤다. NCCECEC(2022)와 NCCPE(2014)의 문서에 기술된 사명(mission)과 일반 목표는 이와 관련된 ECEC법 조항과 관련 규정, UN CRC와의 연계성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한국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교육법(2004),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은 영유아보육법(1991)에 근거한다.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은 아동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누리과정(2019)과 표준보육과정(2020) 문서에 기술된 교육 목적 및 목표는 핀란드와는 달리 해석을 통해 아동권리 요소가 교육 목적 및 목표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구성 방향에 나타난 아동권리 요소는 유사하나 교육과정 문서 내에서 진술의 차이를 보인다.

둘째,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운영 지침에서는 영유아의 놀권리와 참여권 및 발달권 존중, 개별성과 다양성 등이 존중되고 보장받도록 기술되었다.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편성·운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ECEC 교육과정인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2020)의 편성·운영에서는 영유아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강조하였다. 특히,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는 교육과정 운영이 유아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핀란드의 NCCECEC(2018)와 NCCPE(2014)에서도 영유아의 개인적 교육과 보호에 대한 계획(child’s

individua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lan)을 세울 때 영유아의 목소리 즉 관심, 흥미와 필요를 반영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계획·실행 후 평가를 진행할 때에도 발달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영유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한국과 핀란드의 ECEC 교육과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영유아가 보살핌, 교육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영유아 자신의 놀이 및 생활과 관련된 영역에서 영유아의 의견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권정운 외(2022)의 연구에서는 핀란드는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을 3세 미만은 1:4, 3세 이상은 1:8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교사 대 영유아 비율로(OECD, 2020), 교사가 영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참여권 존중에 대한 물리적 시간의 확보가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집 기준으로 영유아 대 교사의 비율을 0세는 1:3, 1세는 1:5, 2세는 1:7, 3세는 1:15, 4세는 1:20, 5세는 1:25로 규정하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아 대 교사의 비율이 OECD 국가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유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핀란드의 NCCECEC(2022)에 제시된 ‘ECEC 교수 활동을 위한 틀’은 영유아의 학습과 안녕, 횡단적 역량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지원 요소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며 영유아 지원은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있다. 영유아 지원은 영유아, 가정, 지역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는데, 영유아의 지원에서 다양한 구성들이 참여하는 것은 핀란드 ECEC 운영 문화에 대한 관점의 강화로 개별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대한 권리 보장을 공동체가 함께 실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의 경우, 누리과정(2019)이나 표준보육과정(2020)에서 특별한 유아에 대한 고려,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를 제시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기술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보육과정의 구성 방향과 운영 지침에 나타난 아동권리를 살펴본 본 연구는 우리나라 ECEC 교육과정에 권리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 영유아 권리 존중의 장으로서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한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이 단위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교육·보육과정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에서 집필 방향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해석되어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추후에는 ECEC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이 실제 교육 체제 안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기관방문, 현장 관계자나 정책 전문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고, 아동권리가 ECEC 실제 안에서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권리가 보다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구(2014). 『아동권리관점에서 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형성과정 및 법령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영자(2018). “유아교사의 유아학대 인식 및 학대예방노력, 유아권리존중 실행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5(3), 79-105.
- 교육부, 보건복지부(2019).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 교육학용어사전(2024). 학제.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12503&cid=42126&categoryId=42126>에서 5월 10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4a). 영유아보육법.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2024b). 기본교육법. <https://www.law.go.kr>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권정윤, 한유미, 김희영(2022). “스웨덴과 핀란드의 취학연령 하향화 대응사례 분석”. 『유아교육연구』, 42(6), 5-27.
- 김영아(2013). “영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유아권리존중과의 관계”. 『영유아교육·보육연구』, 6, 43-64
- 김은영, 임부연, 강은진, 고영미, 김진숙, 문무경, 이경화, 이미화, 이완정, 이정옥, 정선아(2018). 『누리과정 개정 정책 연구』. 교육부·충청남도 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2019). 『누리과정 개정의 배경과 개정 내용』.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인숙(1996). “아동의 권리협약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NGO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학대예방 협회세미나자료집』, 3-31.
- 김태윤, 김미숙(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08, 97-122.
- 김혜전(2020). “예비유아교사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시리천한 유아권리존중 사례 분석”. 『아동과 권리』, 24(4), 691-719.
- 나은숙, 양지애(2011). “유아의 권리에 대한 유치원 교사의 인식”. 『영유아

- 교육·보육연구』, 4, 71-93.
- 나정(2010). “UNICEF아동권리보호 최소기준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영유아교육보육의 위치와 과제”. 『유아교육학논집』, 14(3), 101-122.
- 문선화, 류기형, 김정호, 이경남, 홍봉선(2000). “아동의 삶의 질: 과거, 현재, 미래”. 『한국아동복지학』, 9, 9-49.
- 보건복지부(2020). 『제 4차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 해설서』.
- 서보순(2016). “유아권리와 교사권리에 관한 예비유아교사들의 메타포(metaphor) 분석”. 『유아교육연구』, 36(3), 80-107.
- 서영숙, 서혜경, 김진숙(2009). “유아권리와 권리교육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 및 요구 분석”.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3(3), 215-232.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2015). 『서울시 어린이집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서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혜경, 고지민(2014). “보육실습에서 예비유아교사의 아동권리존중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생태유아교육연구』, 13(4), 79-108.
- 유수복(2019). “보육실습기간 동안 예비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영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인식 연구”. 『인문사회 21』, 10(5), 1577-1590.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 유은영(2021). “핀란드의 국가수준 영유아교육과정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0), 853-873.
- 유정인(2023). “유아교사의 유아권리존중에 대한 중요도-실행도 분석”. 『한국유아교육연구』, 25(4), 409-431.
- 육아정책연구소(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서울: 정성문화사.
- 육아정책연구소(2006). 『스웨덴 육아정책 동향』. 서울: 도서출판 한학문화.
- 육아정책연구소(2018).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아동학대사건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조기발견 체계 구축방안』.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육아정책연구소(2019). 『아동학대 없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지원사업 도입 방안 연구』. 서울 : 육아정책연구소.
- 윤아영(2018). 『한국과 핀란드의 유아교육제도 비교연구』.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주, 김정희(2018). “보육교사의 인성, 원장의 도덕적 리더십, 영유아 권리 존중 실행의 구조적 관계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22(6), 73-93.
- 이운진, 김지현, 이민경(2016). “누리과정 정책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6-26.
- 이은주, 김혜순, 박세정, 최미희, 권수정, 이명순(2018). 『아동권리와 복지』. 고양: 공동체.
- 이재연(2006). “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 연구”. 『아동과 권리』, 19(1), 23-47.
- 이진화, 박창현, 윤지연(2015). 『「3-5세 누리과정」 운영 및 이용 실태와 정책 효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 2015-26.
- 정동재, 김진욱(2021). “영유아보육 · 교육기관에서 영유아권리존중보육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분석”. 『아동과 권리』, 25(2), 187-204.
- 정선아(2007). “스웨덴의 유아교육 · 보육 통합 정책: 유아의 권리와 삶의 관점에서”. 『유아교육연구』, 27(6), 101-124.
- 조부경, 김경은(2017). “교육 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의 성과와 내실화 방안”. 『유아교육연구』, 19(3), 1-22.
- 한유미(2013). “스웨덴과 핀란드의 공보육 제도”. 『스칸디나비아 연구』, 14, 181-214.
- European Commission. (2024). General goals of pre-primary education (취학 전 교육의 목표). <https://eurydice.eacea.ec.europa.eu/national-education-systems/finland/educational-guidelines>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Finnish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02).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Sweden.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4).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Pre-primary Education (6세를 위한 유아교육과정). <https://eperusteet.opintopolku.fi>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18).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0-5세를 위한 영유아교육과정).

- <https://www.oph.fi/en>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1). Mission and general goal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유아교육의 사명과 일반 목표). <https://eperusteet.opintopolku.fi>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Finnish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2022).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0-5세를 위한 영유아교육과정). <https://eperusteet.opintopolku.fi>에서 2024년 5월 10일 인출.
- Hakari, S. (2020). 21세기 핀란드의 유아교육.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0*(11), 21-38.
- Hiilamo, H. (2002). *The rise and fall of Nordic family policy?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nges during the 1990s in Sweden and Finland*. Helsinki: Stakes.
- Kjorholt, A. T. (2002). Small is powerful: Discourses on ‘children and participation’ in Norway. *Childhood, 9*(1), 63-82.
- KOSIS. (2024). 학대행위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9&checkFlag=N에서 5월 10일 인출.
- Mansikka, J., & Lundkvist, M. (2019). Barns perspektiv och delaktighet som ideologisk orientering för småbarnspedagogiken i Finland. *Nordisk tidskrift för pedagogikk og kritikk, 5*, 111-129.
- Mansikka, J., & Lundkvist, M. (2022). Children’s right to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an analysis in Finnish policy docu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30*(1), 232-257.
- OECD. (2006).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aris: OECD Publications.
- OECD. (2013). Starting Strong III: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신동주, 장혜진, 이경옥 역).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원서 2012 출판)
- Onnismaa, E., & Kalliala, M. (2010). Finnish ECEC policy: interpretations, implementations and implications. *Early Years, 30*(3), 267-277.
- Quennerstedt, A. (2015). Mänskliga rättigheter som värdefundament, kunskapsobjekt

- och inflytande: en läroplansanalys. *Utbildning & Demokrati*, 24(1), 5-27.
- UNICEF. (2007),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A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and rights within education.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5/001548/154861e.pdf>.에서 5월 10일 인출.
- UNICEF. (2008). The child care transition, Innocenti Report Card 8,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 Florence.
- Utunen, A. (2005). Parental involve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Unpublished bachelor's thesis, Tamper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Finland.

<Abstract>

Exploring Children's Righ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in Korea and Finland

Kim, Hee You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urriculum in Korea and Finland. For the study, literature data were collected focusing on Korea's 2019 revised Nuri-curriculum, the 4th daycare center standard care curriculum(2020), Finland's NCCECEC(2022), and NCCPE(2014), and the data analysis used the analysis framework of previous studies comparing educational systems and curriculums between countrie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n the composition of the ECEC curriculum in Korea and Finland, rights such as the right to education and respect diversity were found in common. Second, it was suggested that the operation of the ECEC curriculum in Korea and Finland should support the guarantee of Childrens' right to play and learning through play-based educ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suggested that a clear statement on the rights of the ECEC curriculum in Korea should be supplemented through the search for children's rights in the ECEC curriculum in Korea and Finland, and that a change in perspective on the role of the curriculum as a venue for respecting infant rights is necessary.

Key Words: Korea, Finland, Curriculum, ECEC, Children's Rights

* Learning Competency Support Center, Hoseo University.

성명: 김희영

소속: 호서대학교 학습역량지원센터

E-mail: kimhy0113@hoseo.edu

논문 접수일: 2024.5.16.

논문심사 완료일: 2024.7.3.

수정원고 접수일: 2024.7.11.

게재 확정일: 2024.7.12.